

대통령령 제 호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5. . . (제 회)	

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를 제16조로 하고,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(기술인력의 자격정지 기간) ①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간은 별표 3과 같다.

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중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17조(기술인력의 자격정지 기간) ①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간은 별표 3과 같다.
제17조 (생략)	제16조 (현행 제17조와 같음)

■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[별표 3] <신설 2025.00.00>

기술인력에 대한 행정처분기준(제1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,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, 총 자격정지 기간은 1년을 넘지 아니한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 행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, 5년 이상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사항	근거 법령	행정처분기준		
		1차	2차	3차
가).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세부 기준	법 제43조의2제1항			
1)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, 성적서 등의 검사결과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		자격	자격	자격
2) 검사기관의 업무정지처분		정지	정지	정지
		6개월	9개월	1년
		자격	자격	자격

기간 중 검사업무를 수행 한 경우		정지 6개월	정지 9개월	정지 1년
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토양지하수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179